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시사점

2026. 05. 1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규정을 신설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을 관리·감독하고자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등록을 위한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여러가지 의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① 개정배경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및 활용도가 부각되면서 국가 간 자금 이동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의 제약 없이 이전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거래 절차 준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감독 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에 더하여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일반 규율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재편하고 그 등록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② 주요개정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 정의 신설(제3조 제1항 제21호 내지 제23호)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이전업무는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및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한 국경 간 가상자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그 거래 형태나 효과가 위의 거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 신설(제8조의2,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고, ②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의 경우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등을 의미하지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기관과의 연결이 요구될 지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가상자산이전업무와 관련하여 등록한 사항 중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변경·폐지에 대해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 보고·검사·자료제공 체계 정비(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전업자를 포함시켰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자료 집중·교환 대상에 “가상자산 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가상자산 이동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이를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라.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미등록 제재(제29조 제1항)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외국환거래법상 일반 규율 정비(제3조 제1항 제19호, 제8조 제3항, 제11조의 3, 제11조의 4,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6항)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관련 규율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전반의 제도 정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거래 정의와 관련하여 해외지사 등의 유지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었던 체계상 불일치를 보완하였고,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 등에서 일반환전업 및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업무범위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전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외환거래 질서 유지와 집행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바. 부대의견: “이전” 용어 정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안의 부대의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에 따르면 “이전”이라는 용어가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가상자산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현 개정안에서의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가 이전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직접적인 매매, 교환 등이 아닌 타인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나 중개 업무 등이 포함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등의 개정 또는 타법의 제·개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③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업무를 가상자산이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변화하는 외환 거래 환경을 외국환거래법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부분이나, 구체적인 가상자산 이전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이전업무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거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중 대한민국과 외국 간 스테이블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서비스,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조, 서비스 구성요소의 각 기능, 가상자산 이전의 효과 그 구성 요소를 상세히 고려하여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을 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감독체계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의 거래에서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외국환신고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범위로 편입하자는 하였으나,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는바,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을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가 충족되는지, 또는 일반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국외로 전송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상의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입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자는 시행 전까지 등록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등록 절차, 요건, 전산망 연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디지털자산&IT 팀은 디지털자산 분야, 인공지능을 포함한 IT 분야, 개인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고객의 법률이슈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IT 팀은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디지털자산 및 IT 업계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법원 등에서 오랜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기술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IT 기업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최진혁 구성원변호사

T. 02-2010-4967
E. jinhyuk.choi@barunlaw.com

최영노 구성원변호사

T. 02-3479-7876
E. genie7@barunlaw.com

이혜준 소속변호사

T. 02-2010-4966
E. hyejun.lee@barunlaw.com

김태형 소속변호사

T. 02-2010-4987
E. taehyung_kim@barunlaw.com